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- 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(2020. 6. 1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과장 이용욱

가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」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 등에 대하여
법제처 권고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
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상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가 상위법과 불일치에
따른 개정(안 제8조)
- 2)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착오 인용 사항 수정
(안 제13조제6항)

- 3)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토록 규정된 상위법 내용 조례 반영(안 제18조)
- 4) 법령에 규정된 명문대로 정비(안 제20조제1항)
- 5) 조례 각 호의 내용 중 상위법과의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중복사항 삭제(안 제28조)
- 6)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정비하고, 잘못 인용된 사항 및 용어 정비(안 제35조제1항 및 제3항)
- 7) 조례에서 규정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사유를 상위법령 내용과 일치토록 개정(안 제37조)
- 8) 별표 중 명칭 및 내용 현행화

3. 검토보고 (최종익 전문위원)

- 본 개정조례안은 2020.5.22.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9호로 제출되어, 2020.5.26.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개정 연유를 살펴보면, 법제처의 정비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, 삭제, 신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검사명 등을 현행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.
-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, 안 제8조의 경우, 위원의 해임 또는 위촉 사항으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0조의3제2항8) 이외의 사항은 삭제

8) 제10조의3(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하고, 안 제18조에서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제3항9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¹⁰⁾의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구립어린이 집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하였음. 안 제28조의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의 취소와 안 제35조의 비용의 보조 등과 안 제37조의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¹¹⁾와 같은 법 제26조 및 제36조와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조문을 삭제하거나 신설 및 수정하고 안 제13조제4항 관련 [별표]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의 용도와 검사료의 검사 명을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규정하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.

- 참고로 2020.5.31.기준으로 마포구 영유아는 15,081명이고 어린이 집은 국공립 75개소를 포함한 총 203개소에 7,51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구립 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소를 확충하였고 2021년에도 5개소 확충을 목표로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확인되었음.

[본조신설 2015. 12. 10.]

9) **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**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설 2018. 12. 24.>

10) **제19조의2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)**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.

11) **제25조(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)**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3. 19., 2011. 12. 8., 2012. 2. 3., 2013. 8. 5., 2015. 1. 28.>

1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
2.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4.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
5.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
6.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
7.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8.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
[전문개정 2009. 7. 3.]

[제목개정 2011. 12. 8.]

〈표 1〉 마포구 어린이집 및 영유아 현황

(단위: 개소, 명, 2020.5.14.기준)

○ 어린이집 정·현원 현황

구분	계	국공립	민간	가정	법인 단체	직장	부모 협동	방과후
시설수	203	75	36	68	3	16	4	1
정 원	8,999	4,588	1,927	1,232	127	932	153	40
현 원	7,510	3,997	1,614	956	100	673	137	33

○ 영유아 현황 : 15,081명(만0~2세 6,817명, 만3~5세 8,264명)

〈표 2〉 구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실적 및 계획

(단위 : 개소)

연도별 실적·목표	2018	2019	2020	2021	2022
신규 확충 수	6	2	5	5	5

※ 〈표1,2〉 자료출처: 마포구(신규 확충 수는 서울시 확충심의 승인 기준이며 2018~2020은 구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이며 2021~2022은 확충 계획을 표시함)

- 따라서 「영유아보육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조문의 내용을 수정, 삭제, 신설하는 등 법제처 개정 협조사항을 반영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변경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규정하였기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